

의안번호	2201628
의 퇴 인	백승아 의원
회 답 일	2024.08.05.
추계번호	24C1885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·도교육청에 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을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6,000만원, 2029년 16억 9,200만원 등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총 74억 3,200만원(연평균 14억 8,600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교육활동보호조사관 (안 제17조의2)	860	1,595	1,626	1,659	1,692	7,432	1,486

주: 1) ‘교권보호관’이 이미 설치된 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’을 제외한 16개 시·도교육청에 해당 ‘교권보호관’과 유사한 직급 및 연봉의 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이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값임

2) 2025년도는 6개월분에 대한 계산값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(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등)	(제3항)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·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17조의2 (교육활동보호조사관 등)	(제1항)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·조사·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둔다. (제2항)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의 임명·자격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7조 (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등)	×	·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정당한 유아 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원이 법의 보호를 “충분히”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·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· '24년 현재 각 시·도교육청은 ‘교원배상책임보험’ 을 통하여 ‘분쟁·조정, 민형사 소송지원, 배상책 임, 치료요양 등’에 대한 보장을 실시하고 있음 ¹⁾ · 다만, 개정안의 제안이유 ²⁾ 등으로 볼 때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방안 이외에 신 규·추가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 에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예측 이 어려움
2	안 제17조의2 (교육활동보호조사관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 설치·운영 관련 비
용을 추계함

- 개정안은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피
해를 입은 교원 보호·조사·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교육청에
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을 두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본 추계서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경비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·운영
되고 있는 “교권보호관”의 연봉을 준용하여 인건비·기본경비·자산취득비를

1) ‘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’(2024.05.)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

2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1628호) 제안이유
(...)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**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
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**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
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**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
법률적 보호·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**(이하 생략)

추계함
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업무를 총괄하고, ‘교육활동 보호(상담·조사 및 관리)’업무와 ‘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, 연수 및 홍보 등’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“교권보호관” 직위(일반임기제 교육행정 5급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
- 본 추계서에서는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“교권보호관”과 유사한 직급 및 연봉으로 각 시·도에 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이 설치·운영되는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- 단, 2025년은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채용 및 임용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개정안은 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을 시·도교육청에 둔다고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, 본 추계서에서는 관련 비용으로 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의 인건비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를 계산함

-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보좌하기 위한 인력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, 이는 기존 관련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함³⁾
-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의 인건비는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'24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‘교권보호관’의 연봉 79,585천원을 준용하고, 이에 추계기간 동안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보수상승률과 기관부담금(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공무원연금)비율을 적용함
-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「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」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⁴⁾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,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자산취득비는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신규 배치하는 2025년에 1회 발생하

3) 다만,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

4)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물건비에는 운영비(일반수용비·공공요금·특근매식비 등), 여비, 업무추진비,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며, 본 추계서에서는 2024년도의 6.54%를 적용

는 것으로 가정하며,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산취득비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2] 교육활동보호조사관 배치 단가(추정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인건비 (A)	연봉(a)	41	83	84	86	87	381	76
	기관부담금(b)	5	11	11	11	12	51	10
	소계(A=a+b)	46	94	95	97	99	431	86
기본경비(B=A×6.54%)		3	6	6	6	6	28	6
자산취득비(C)		5	—	—	—	—	5	1
단가 계(A+B+C)		54	100	101	103	105	464	93

주: 1) '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'의 '교권보호관'의 연봉 등을 준용

2) 2025년도는 6개월분에 대한 계산값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이에 개정안에 따라 시·도교육청에 '교육활동보호조사관'을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총 74억 3,200만원(연평균 14억 8,600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교육활동보호조사관 관련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1인당 운영 비용(A)	54	100	101	103	105	464	93
설치 시·도(B)	16	16	16	16	16	—	16
단가 계(C=A×B)	860	1,595	1,626	1,659	1,692	7,432	1,486

주: 1) '교권보호관'이 이미 설치된 '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'을 제외한 16개 시·도교육청에 해당 '교권보호관'과 유사한 직급 및 연봉의 '교육활동보호조사관'이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값임

2) 2025년도는 6개월분에 대한 계산값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’의 ‘교권보호관’과 유사한 직급 및 연봉으로 ‘교육활동보호조사관’이 16개 시·도에 설치·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 값이며, 실제 운영 형태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